

KPMG Tax

Korean Tax Update

March 2016, Issue 21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혜택 첫 사례 나온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3월 중순에 16 건(개인 13 건, 법인 3 건)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대하여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 자진신고자들의 신고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하여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

(유형 2) 거주자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소득 자진신고

(유형 3)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국외 이자·배당소득 자진신고

(유형 4)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령한 대가를 증빙없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유형 5)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 후 미신고 하였으나 자진신고

국세청,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6. 3. 18.(금) 중국 북경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을 공동으로 서명하였음.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중국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

[개정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074 호, 2016.3.31)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

종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하였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와 비교하여 해당 법인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 직계 존비속은 포함하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 544 호, 2016.3.7)

①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

적용제외대상 승용차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를 추가하였으며 업무용 사용범위를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규정함(접대목적의 경우에도 업무용에 해당).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과 관련하여 (i)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ii)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로 규정함

②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 합리화

종합소매업 법인(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

③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당좌대출 이자율 기준 인하

특수관계자에 무상·저리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6.9%에서 4.6%로 인하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546 호, 2016.3.9)

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연 2.5 퍼센트에서 1.8 퍼센트로 조정.

②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기준 보완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557 호, 2016.3.21)

① 기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는 계속 경영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공제순서는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②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방법 구체화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 제공방법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으로 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543 호, 2016.3.7)

① 국세환급금 이자율 인하(2.5% → 1.8%)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 14050 호, 2016.3.2)

① 물납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자산 보유하는 사실에 과세하는 유보세로 매년 일정시점에 일정액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폐지함.

[예규·판례]

[예규]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2016.02.25

-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판례 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의 산정

대법원 2015 두 4150, 2016.3.10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일부 이중과세 미해소에 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납세자가 최종 승소함.
- 납세자 주장 이중과세 조정 재산세액 :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Min(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재산세율

[판례 2]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을 통한 일시적인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손금부인

대법원 2015 두 50153, 2016.2.18

-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판례 3]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대법 2014 두 35706, 2016.02.18

- A 는 2011년 10월 18일 공사대금 중 30 억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받은 후 그 지급기일인 2011년 10월 31일 대금을 지급함(7일 초과) 과세관청 및 1심에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2011년 10월 31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그전에 발급한 T/I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함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i) A 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았고, (ii)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을 의도도 없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

[심판례] 지주회사의 출자전환한 대여금의 손금인정여부조심 2015 서 2085, 2016.02.18

-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청구법인이 처했던 현실을 보면 지주회사로서 법인등기등본상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당국이 모기업이 계열건설사에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그룹 전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중단과 금리상 불이익을 줄 것임을 밝힘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신용경색 방지를 위해서라도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 손금산입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6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